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內事件

特許登錄無効

〈大法院 第2部 判決〉(1986. 5. 27)

事件番號：85 후 120

裁判長：이 준 승

關與法官：오 성 환 · 이 병 후 · 윤 관

1. 審判請求人(被上告人)：성동상사(주)(대표：김 용 해)
2. 被審判請求人(上告人)：日本人 가도오 에이지
3. 原審決：特許廳 1985. 9. 28字, 1984年 抗告審判(當) 第151號 審決
4. 主 文：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費用은 上告人의 부담으로 한다.
5. 理 由：

上告理由를 判斷한다.

1. 原審決이 그 理由에서, 판지로 된 냉동어 육류의 포장용 종이상자에 관한 이事件 特許의 상세한 內容과 같은 종이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위 特許出願 당시에 공지된 引用考案(甲第3號證)의 內容을 그 判示와 같이 비교하여, 兩者는 모두 그 材料로 쓰는 종이의 두께·내수도·컵흡수도등 材質이 同一 범주내의 것이고, 요철사이의 내수피막에 균열이 생기도록 하는 점에 있어서 技術的 구성도 同一한 것이고, 요철가공을 한 부분의 내수피막에 균열을 생기게 하여 포장 내용물로부터 壓出된 空氣 및 水分이 균열부분을 통해 완만하게 종이층 및 층사이에 침투하게 하여 이를 종이상자 밖으로 흐트러져 나가게 함으로써 內容物의 品質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점에 있어서 作用效果도 같은 것이며, 다만 이 事件 特許가 요철면의 판지면에 대한 角度(10~45°), 요철가공후에 있어서의 요면내수도(80~350g/m²), 투기도(200~3,500초/100cc), 파열강도(3.5~14kg/cm²)등의 수치를 한정하고 있는 점이 引用考案의 경우와 다르기는 하나,

요철면의 角度는 요철의 길이와 깊이의 수치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차이에 불과하고, 내수도·투기도·파열강도는 사용하는 종이의 두께·내수도·가공된 요철의 깊이 및 길이의 수치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되는 效果로서 그 差異點만으로는 특별한 技術的 구성이라고 認定되지 않으며 作用效果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라고 判斷하였다.

2. 記錄에 의하여 甲第1號證에 기재된 이 事件 特許發明의 상세한 說明과 原審이 引用한 甲第3號證에 기재된 引用考案의 內容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原審의 判斷은 正當하고, 그 判斷過程에 소론과 같이 이 事件 特許의 引用考案의 發明目的·技術的 構成·作用效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심리미진이나 特許의 進歩性에 관한 법리오해의 違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論旨 理由없다.

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. (☉)